

의안번호	2214358
의 퇴 인	김정호의원
회 답 일	2026.3.20.
추계번호	25B6253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의 적용대상에 준주택 등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함하고, 유형별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며, 최저주거기준에 시설 및 안전·환경 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원(연평균 2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최저주거기준의 설정 (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)	100	-	-	-	-	100	20

주: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제1항 (최저주거기준의 설정)	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·공고하여야 함(제1항 후단 신설) 이 경우 최저주거기준의 대상은 「주택법」 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처를 포함하며,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형별로 최저주거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음	의무규정 재량규정
2	안 제17조제3항 (최저주거기준의 설정)	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(제3항) 1.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: 상하수도 시설·전기시설·가스시설·지역난방시설 및 소방설비 2. 구조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 기준 가. 고정하중, 적재하중(積載荷重), 적설하중(積雪荷重), 풍압(風壓), 지진,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한 구조를 유지할 것 나. 주요구조부는 내화·방습에 용이한 구조로 할 것 다. 해일·홍수·산사태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를 갖출 것 3.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환경 기준 가. 실내 공간에 충분한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 설비를 설치할 것 나. 실내 공간이 방수·방습·방풍·방음 및 단열 기능이 원활할 것 4. 그 밖에 주거면적, 용도별 방의 개수, 주택의 구조·설비·성능 및 환경요소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 (최저주거기준의 설정)	○	• (추계)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최저주거기준 재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를 추산함
		×	• (미추계) 개정안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의 적용대상 및 기준이 변경될 경우 새롭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해당하는 가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동법 제18조¹⁾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등이 확대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. 다만, 추가 지원 대상 가구는 개정안에 따른 지원범위,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등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지원대상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- 참고로,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, 개량자금 지원, 비주택거주자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

1) 제18조(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최저주거기준의 적용대상을 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쳐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유형별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,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될 사항으로 시설·설비, 안전 기준, 환경 기준 등도 포함하도록 구체화하고 있음. 이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최저주거기준 재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관한 비용을 추산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추계대상) 개정안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의 적용대상에 준주택 등 주택 이외의 거쳐를 포함하고, 유형별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며, 최저주거기준에 시설 및 안전·환경 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는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산함
 - (유사사례) 국토교통부는 2025년 「최저주거기준 조정 및 유도주거기준 정립방안 연구」 사업을 1억원 규모로 시행 중임
 - (추계방법) 「주거기본법」 제17조²⁾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은 5년 주기로 설

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·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2) 제17조(최저주거기준의 설정)
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.

정·공고되고 있으므로, 개정안 시행 첫 해인 2027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의 적용대상에 준주택 등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함하고, 유형별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며, 최저주거기준에 시설 및 안전·환경 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원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최저주거기준 재설정 검토	100	-	-	-	-	100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